

『유럽연합, CO2 배출량 및 연료 소비량의 측정에 적용 가능한 규정 (EU) 582/2011 개정안』 심층분석 보고서

2024. 08.

TBT 통보 여부	통보	HS Code	8701, 8702, 8703, 8704, 8705
통보국	유럽연합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10,883,919 (2023)
작성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KCL)	문의처	tbt@kotica.or.kr

[목 차]

1. 규제 개요	1
2. 개정 세부내용	3
3. 관련 법령 및 표준	6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중장비 차량의 연비를 향상시키는 신기술의 구현을 반영하기 위해 규정(EU) 2017/2400의 개정이 필요하며, CO2 측정 규칙 측면에서 상충 되는 요구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정 582/2011의 개정이 필요함
- (규제요지) 본 규정은 특히 중형 트럭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다루므로, 규정(EU) 2017/2400과 위원회 규정(EU) 582/2011에 명시된 CO2 배출량과 연료 소비량 값을 결정하기 위한 전 세계 조화된 경량 차량 시험 절차 간의 상충되는 의무는 피해야 하며, 위원회 규정(EU) 582/2011은 중형 트럭이 CO2 배출량과 연료 소비량 값을 결정하기 위해 두 가지 다른 제도에서 시험되지 않도록 적절히 수정함

TBT 통보번호	▪ EU/1075	통보일	▪ 2024년 7월 22일	
		고시일	▪ -	
규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형 트럭과 대형 버스의 CO2 배출 및 연료 소비량의 측정과 수소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하는 차량의 포함과 관련하여 (EU) 2017/2400을 개정하고, EU 형식 승인을 연장하기 위해 CO2 배출량 및 연료 소비량의 측정에 적용 가능한 규칙과 관련하여 규정 (EU) 582/2011를 개정하는 위원회 규정안 (6페이지, 영어), (116페이지, 영어) ▪ Draft Commission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 (EU) 2017/2400 as regards the determination of the CO2 emissions and fuel consumption of medium and heavy lorries and heavy buses and the inclusion of vehicles running on hydrogen and other new technologies and amending Regulation (EU) 582/2011 as regards the applicable rules on the determination of CO2 emissions and fuel consumption in order to obtain an extension to an EU type-approval 		
규제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European Commission 		
요구사항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제 · 개정 상태	▪ 개정 초안
채택 일	▪ 2025년 1월
의견수렴 마감일	▪ 2024년 9월 20일
발효 일	▪ -
준수기한	▪ -

□ (적용대상 및 수출규모)

적용대상	▪ 중장비 차량, 상업용 차량 ▪ Heavy duty vehicles, Commercial vehicles		
적용범위	▪ (EU) 2017/2400과 위원회 규정(EU) 582/2011에 명시된 CO2 배출량과 연료 소비량 값 ▪ 위원회 규정(EU) 582/2011에 해당하는 중형 트럭		
對 발행국 수출액 (전년기준, 천불)	▪ 10,883,919(2023)	HS Code	▪ 8701, 8702, 8703, 8704, 8705

2

개정 세부내용

□ (1조) Regulation (EU) 2017/2400

- Regulation (EU) 2017/2400은 다음과 같이 개정됨

[표 1] 개정 세부내용 비교표

구분	현행	개정안 / 최종안
1항	-	제12조 1항 : 항목(k)이 <u>추가됨</u> (k) 휠 엔드.
2항	13조 6항 기체 또는 트레일러 공기 저항의 표준 값은 부록 VIII의 부록 7에 따라 결정됨	13조 (a) 제 6항 <u>대체</u> 공기 저항에 대한 표준 값은 부속서 VIII의 부록 7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b) 제 10항 <u>추가</u> 휠 엔드(wheel ends)에 대한 표준 값은 부속서 VIIa의 항목 6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3항	14조 8항 기체 또는 트레일러 공기 저항에 대 한 인증 값은 부록 VIII의 항목 3에 따 라 결정됨	제14조 (a) 제8항 <u>대체</u> 공기 저항에 대한 인증 값은 부속서 VIII의 항목 3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b) 제11항 <u>추가</u> 휠 엔드에 대한 인증값은 부속서 VIIa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4항	-	제15조 1항 다음 들여쓰기 <u>추가</u> - 휠 엔드(wheel ends)의 패밀리 개념 에 관한 부속서 VIIa.
5항	-	제16조 2항 다음 들여쓰기 <u>추가</u> - 휠 엔드(wheel ends)에 관한 부속서 VIIa의 부록 2
6항	-	제17조 2항 다음 들여쓰기 <u>추가</u> - 휠 엔드(wheel ends)에 관한 부속서 VIIa의 부록 1.
7항	-	제18조 1항 첫 번째 하위문단에 다음 들여쓰기 <u>추가</u> - 휠 엔드(wheel ends)의 패밀리 개념 에 관한 부속서 VIIa.'
8항	- 차체 또는 트레일러 공기 저항과 관련하여 부속서 VIII에 부록 6에 규정된 절차	제22조 항목 2, 2항 네 번째 들여쓰기 <u>대체</u> - 공기 저항에 관한 부속서 VIII의 부록 6에 규정된 절차
9항	경과 규정 1. 제10조 3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에 언급된 의무가 준수되 지 않은 경우 회원국은 다음의 등록, 판매 또는 서비스 진입을 금지해야 함	제24조 <u>대체</u> <u>요건 적용</u> 본 규정의 제10조(3)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본 규정의 제9조에 언급된 의무가 준수 되지 않은 경우, 회원국은 형식 승인 차량

구분	현행	개정안 / 최종안
	<p>(a) 2019년 7월 1일부터 부속서 I의 표 1에 정의된 그룹 4, 5, 9, 10에 속하는 차량</p> <p>(b) 2020년 1월 1일부터 부록 I의 표 1에 정의된 그룹 1, 2, 3에 속하는 차량</p> <p>(c) 2020년 7월 1일부터 부록 I의 표 1에 정의된 11, 12 및 16 그룹에 속하는 차량</p> <p>2. 제1항 (a)호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언급된 의무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생산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그룹 4, 5, 9, 10에 속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생산 날짜는 적합성 인증서 서명일 또는 개별 승인 인증서 발급일임</p>	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가 규정(EU) 2018/858의 제48조의 목적을 위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형식 승인 차량 및 개별적으로 승인된 차량의 경우 그룹 1s, 1, 2, 3, 4, 5, 9, 10, 11, 12, 16, 31~40, 53 및 54의 차량의 등록, 판매 또는 서비스 진입을 금지해야 함
10항	부속서 I	부속서 I는 본 규정의 <u>부속서 I</u> 에 명시된 바에 따라 수정됨
11항	부속서 III	부속서 III은 본 규정의 <u>부속서 II</u> 에 명시된 대로 개정됨
12항	부속서 IV	부속서 IV는 본 규정의 <u>부속서 III</u> 에 명시된 대로 개정됨
13항	부속서 V	부속서 V는 본 규정의 <u>부속서 IV</u> 에 명시된 대로 개정됨
14항	부속서 VI	부속서 VI는 본 규정의 <u>부속서 V</u> 에 명시된 대로 개정됨
15항	부속서 VI	본 규정에 대한 <u>부속서 VI</u> 의 텍스트는 <u>부속서 VIIa</u> 로 삽입됨
16항	부속서 VII	부속서 VII는 본 규정의 <u>부속서 VI</u> 에 명시된 대로 개정됨
17항	부속서 IX	부속서 IX는 본 규정의 <u>부속서 VII</u> 에 명시된 대로 개정됨
18항	부속서 Xa	부속서 Xa는 본 규정의 <u>부속서 IX</u> 에 명시된 대로 개정됨
19항	부속서 Xb	부속서 Xb는 본 규정의 <u>부속서 X</u> 에 명시된 대로 개정됨

□ (2조) Regulation (EU) 582/2011

- Regulation (EU) 582/2011의 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됨

[표 2] 개정 세부내용 비교표

구분	현행	개정안 / 최종안
1항	<u>3조 1항 두 번째 단락</u> 배출과 관련하여 승인된 엔진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의 EU 형식 승인 또는 배출과 관련하여 차량의 EU 형식 승인을 받으려면 제조업체는 해당 차량 그룹과 관련하여 위원회 규정 (EU) 2017/2400 (2)의 제6조 및 부록 II에 명시된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해야 함	삭제

구분	현행	개정안 / 최종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제조업체가 승인 대상 유형의 신차가 해당 차량 그룹에 대해 규정 (EU) 2017/2400 제24조 1항의 (a), (b) 및 (c)항에 명시된 날짜 또는 그 이후에 유럽연합에서 등록, 출시 또는 운행에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2항	<p>3항 배출과 관련하여 승인된 엔진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의 EU 형식 승인 또는 배출과 관련하여 차량의 EU 형식 승인을 받으려면 제조업체는 해당 차량 그룹과 관련하여 위원회 규정 (EU) 2017/2400 (2)의 제6조 및 부록 II에 명시된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제조업체가 승인 대상 유형의 신차가 해당 차량 그룹에 대해 규정 (EU) 2017/2400 제24조 1항의 (a), (b) 및 (c)항에 명시된 날짜 또는 그 이후에 유럽연합에서 등록, 출시 또는 운행에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p>3항 대체 본 규정에 따라 형식 승인된 배출에 관한 EU 형식 승인 연장을 받으려면, 기준 질량이 2,380kg을 초과하지만 2,610kg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 제조업자는 부속서 VIII의 섹션 5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예외는 이러한 차량의 CO₂ 배출량 및 연료 소비량 값이 규정(EU) 2017/2400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임

관련 법령 및 표준

- Regulation (EU) 2017/2400 - 대형 차량의 CO₂ 배출량 및 연료 소비량 결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C) No 595/2009를 이행하고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7/46/EC 및 위원회 규정 (EU) No 582/2011 개정
- Regulation (EU) 582/2011 - 대형 차량의 배기ガ스 배출(유로 VI)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EC) 제595/2009호 시행 및 개정,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7/46/EC의 부록 I 및 III 개정